

## 외국인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합의서

⑤ 1995. 3. 31 개정

## 외항상선 선원정책협의회 노사합의

WTO 출범으로 인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해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선원들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며 선원들의 선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5. 3. 31. 개최한 외항상선 선원정책협의회(이하 외선협)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혼승대상 외국인선원은 원칙적으로 부원선원으로 하며 혼승인원은 척당 5명이내의 범위에서 항로, 선종, 선령, 운항특성을 고려하여 선박 별로 단위노사간에 별도 합의한다.  
단, 한국선원이 승선을 기피하는 특정선박으로서 외선협에서 심사한 선박은 상기 혼승인원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 선주는 외국인선원 혼승확대에 즈음하여 기존선원을 무단히 축소하지 않는 등 한국선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예비원제도를 철저히 이행 한다.
3. 선주는 외국인선원 혼승으로 인한 한국선원들의 선내 노동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앞으로 선원법과 단체협약 개정에 있어 임금, 휴일 및 기타 근로조건개선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보장한다.
4. 종전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합의사항 중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종전 합의대로 유효하며, 본 합의내용은 1995. 3. 31. 부터 발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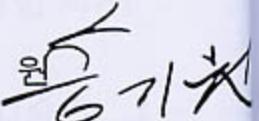
5. 노·사는 부속합의서에 게기된 사항을 외선협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한다.

별첨 : 부속합의서 1부.

1995. 3. 31.

외선협 의장 조천봉

교체 의장 송기원



위원 김선동

위원 강영호

" 김팔재

" 김용기

" 박치순

" 김철

" 이복재

" 유준국

" 안이문

" 차장호

" 정무송

" 현정준

간사 박정식

간사 박찬재

## 부 속 합 의 서

1. 노사는 생산성 향상, 경쟁력 향상, 해난방지 및 선박자동화와 근로환경을 고려한 선박정원등의 정책사항에 대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하며, 선협은 외국인혼승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및 한국해운의 발전을 위한 국제선원 노동외교에 적극 협력하고, 선원노련은 이에 대비한다.
2. 선원노련과 선협은 한국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의 선대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실천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
3. 선주는 국적선의 편의치적화를 가능한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원고용 등 그 대책에 대하여 단위노사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외선협은 선주로 하여금 회사내 기존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토록 권고하며, 또한 선원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원복지기금 조성위원회를 구성한다.
5. 외국인선원의 알선창구는 선원의 적기수급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복수화하자는 노조측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6. 90. 2. 6. 합의한 한국선원유족보상에 관한 노사합의선언의 보상금 인상에 대해서 초속히 협의하기로 한다.